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9월 24일, 박균택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9월 25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 1. 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1. 21.) 상정·축조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2. 3.)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

제1차 전체회의(2026. 2. 4.)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
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균택의원)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세진)

(1)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 출연 근거 등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조제1항),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① ----- -----물품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매년 그----- -----.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 ----- -----.

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의 운용 관련

공탁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바,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변제공탁¹⁾,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하는 형사공탁²⁾ 등이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음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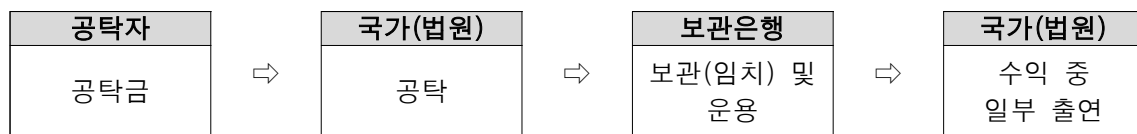
이러한 공탁물의 보관·관리 등을 위하여 현행 「공탁법」 제3조⁴⁾에서

-
- 1)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3) 「공탁규칙」 제2조(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辨濟供託)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保證供託)
 -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에 따른 재심(再審)이나 상소(上訴)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執行停止)와 관련된 공탁
 -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제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暫定處分)과 관련된 공탁
 -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執行供託)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解放金額)의 공탁
 4. 몰취공탁(沒取供託)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른 소명(疏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 4) 「공탁법」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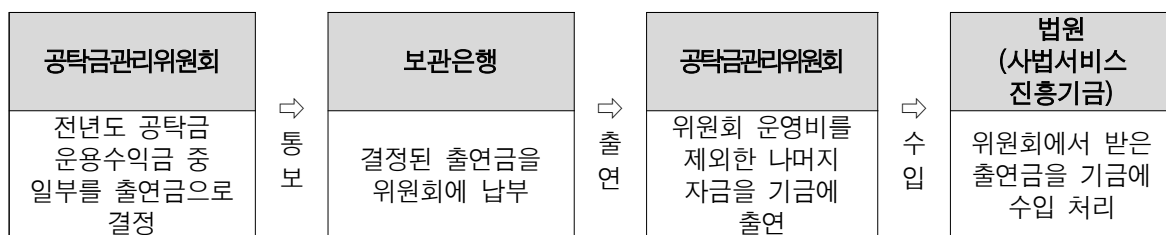
는 대법원장이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9조⁵⁾에서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행정처는 공탁금을 보관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각급 법원의 보관은행으로 지정하여 보관하도록 하고⁶⁾, 보관은행은 보관된 공탁금을 운영하여 그에 따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고,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이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공탁금 운용수익 발생 흐름도>



<출연금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구조>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5) 「공탁법」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 2025년 12월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현황(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 총 10개 은행(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iM뱅크,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한편, 현재 「공탁법」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대법원규칙)에 근거하여 공탁금과 유사한 성격의 “법원보관금⁷⁾”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으로 함께 지정⁸⁾하여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공탁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공탁금과 달리 법원보관금의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어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수익금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2년 8월 감사원은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보관은행의 운용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과도한 수준의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⁹⁾.

7)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8)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취급점의 지정) 법원보관금의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현재 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시 ‘보관금·송달료 보관은행은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된 은행으로 동반 교체함’을 지정조건에 명시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으로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음.

9) 감사원 통보(2022년 8월 23일), “법원보관금 운영에 따른 수익의 보관은행 귀속 부적정”

<법원보관금 보관은행 운용수익 산정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관금평잔(직전년도)	1,849,787	2,062,639	1,731,755	1,695,936
운용수익	48,094	49,503	55,416	76,317
포괄이윤	27,747	30,940	31,172	30,527
이자비용	4,070	2,063	1,732	5,936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2025. 12.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수익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으로 구성되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은 공탁금의 경우 보관은행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 운용수익금 중 일부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원보관금의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어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수익금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의 지적(2022년 8월 23일)을

고려하여 법률에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일부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민간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바¹⁰⁾, 법원은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으로 약 2,856억 원을 총 수입으로 예상하면서, 그 중 민간출연금 계획안에는 기존의 공탁 출연금 2,447억 원에 더하여 법원보관금 출연금으로 400억 원이 추가로 출연될 것을 전제로 수입계획을 편성하여 예산이 확정되었고, 이는 「공탁법」 개정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10) 「공탁법」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합 계	960,675	1,087,242	126,567	13.2
□ 예 산	729,896	801,618	71,722	9.8
- 일반회계	472,174	528,114	55,940	11.8
- 등기특별회계	257,722	273,504	15,782	6.1
□ 기 금	230,779	285,624	54,845	23.8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30,779	285,624	54,845	23.8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2025. 12.

< 2026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민간출연금 수입계획 내역 >

연 도	금 액(백만원)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년도	284,740	■ 2026년 예상 공탁 출연금 및 「공탁법」 개정 예정으로 인한 신규 법원보관금 출연금 적용 - 공탁 출연금 2,447억 4,000만원: 2025년 1월~3월까지의 각 은행별 공탁금 평균잔액에 각 은행별 2025년 예상 자금운용수익률 및 순이자마진을 적용하여 산출 - 법원보관금 출연금 400억원: 현재 공탁출연금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산출. 2023년 보관금 평균잔액에 각 은행별 2025년 예상 자금운용수익률 및 순이자마진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2025. 12.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만 둘 뿐 출연의 시기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출연에 관한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법원보관금 취급점으로 지정된 은행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에 법원보관금 취급점으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은행은 개정법률에 따른 법원보관금 보관자 지정 은행으로서의 효력을 동일하게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부칙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및 제3조(법원보관금 보관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의 출연 시기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고, 기존에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법원보관금 보관자 지정 은행으로서의 효력을 동일하게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두는 등 개정안의 부칙을 변경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수정주요내용

- 가.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2025년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 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간주함(안 부칙 제3조 신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부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보관금 보관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u> <u>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한다.</u> <u>제3조(법원보관금 보관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u>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공탁물보관자의 지정)”을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을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탁금을”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으로, “매년 공탁금”을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탁금”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보관금 보관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 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 업자를 지정한다.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① ----- -----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법원보관금-----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 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 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 연(出捐)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매년 그-- ----- -----.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 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 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 ----- ----- ----- -----.